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〔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공사〕

□ 점검일시 : 2022.01.12 (수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정진혁
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추락부에 안전시설(안전난간, 작업발판 등) 설치자, 기둥 거푸집 구속 철물 작업자, 각종 가설비계 구조물 조립 및 해체 작업자와 같이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자들은 작업 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걸이를 걸도록 수시교육 및 관리 요망(1-1)
 - 작업대에서 상하이동 시 안전난간을 사용하여 수직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수직사다리와 해치 발판 설치하여 통행 요망(1-2)
 - 현장 전체적으로 추락부에 설치한 안전난간 등 방호시설이 작업으로 인해 망실된 개소를 전수조사 하여 복구 요망(1-3)
 - 주 작업통로 최상단 작업발판에 작업이 없어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으로 설치 전까지 출입통제조치 요망(1-4)
 - 각 종 거푸집동바리, 드라이에어리어, E/V 피트 등에 설치된 가설비계 조립 및 해체 전 안전한 통로 확보 후 작업 요망(1-5)
 - 외벽 콘크리트 타설 전 전도, 낙하,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요망(1-6)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,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, 제57조(비계 등의 조립/해체 및 변경)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건축부) - 현장에서 불가피한 경우 낙하물 방지시설이 없이 자재를 받아치기하거나 공중에서 옮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, 이 때 하부에 작업자가 통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 요망(2)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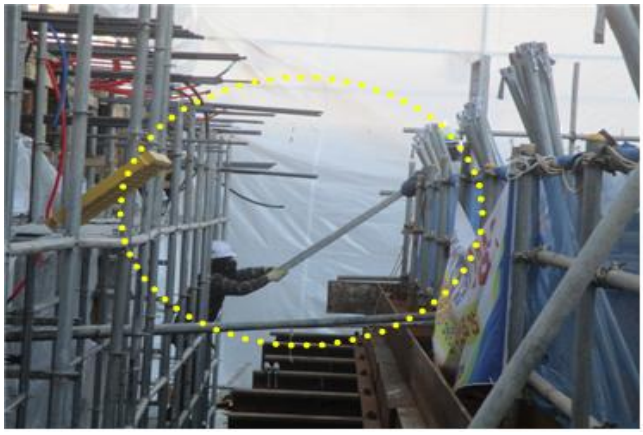
○ 거푸집동바리 안전(건축부) - 거푸집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 순간이 가장 위험하므로 타설이 진행되지 않은 보나 슬래브의 받침비계(U-Head) 또는 서포트의 수직도와 상하 고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 요망(3) 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3.3.1 거푸집동바리-004(파이프 서포트)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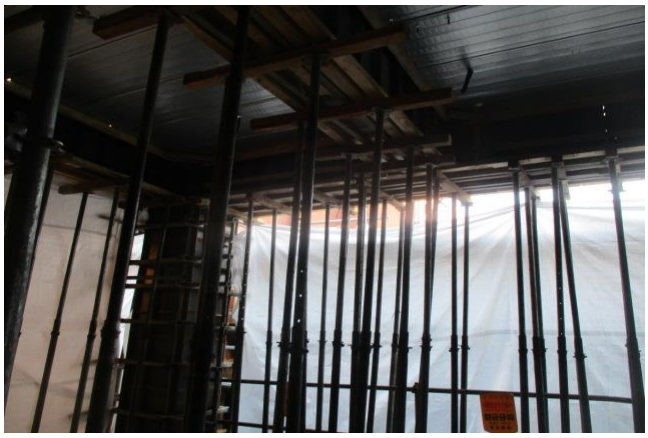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건축부) -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반입된 고체연료는 인화성물질로 미사용 반입품은 별도의 위험물 보관소에 보관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양만 분출해사용고 주변에 다른 인화성 물질이 없도록 관리 요망(4) 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3.1.6 화재/폭발/질식 재해예방-004(위험물 보관소)	